



경기도의회 제393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송파학사 운영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 경기도지사 제출
제57번

2026. 9. 7.(월)

여 성 가 족 평 생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 창 희

경기도송파학사 운영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요구이유

- 경기도송파학사는 경기도민 학생의 주거안정 및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 시설로, 국군복지단 소유 시설에서 군인자녀 우선입사 후 발생한 공실을 활용하는 구조인 만큼 국군복지단과의 긴밀한 협력 및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체계 유지가 필요함.
- 이에 따라 기숙사 운영 경험을 갖춘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공기관 위탁하여 학사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입사생 생활지원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경기도송파학사 운영

나. 사업 추진 연혁

구분	수탁기간	수탁기관	도의회 보고/동의	비 고
1	'15.6.~'16.3.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비대상	'25.1.1.부터 도의회 동의 대상
2	'16.4.~'17.3.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비대상	
3	'17.4.~'18.3.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비대상	
4	'18.4.~'19.12.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비대상	
5	'20.1.~'20.12.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비대상	
6	'21.1.~'23.12.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비대상	
7	'24.1.~'24.12.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6년 2월 보고 (제388회 임시회)	
	'25.1.~'26.12.	(재)경기도미래세대재단		

다.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10조의2(지원사업)

-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11조(업무의 위탁)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사무의 위탁 및 사업대행)

2) 필요성

- 기존 수탁기관은 송파학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입사생 생활지원 및 학사 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송파학사는 국군복지단 소유 시설로 지속적인 협력체계 유지와 운영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위탁운영을 희망함.

라. 위탁사무 내용

1) 주요 사무내용

- 입사생 모집·선발, 입·퇴사 관리 및 생활지도
- 입사생 생활지원 및 취창업 특강, 국내 역사·유적 탐방 등 프로그램 운영
- 기숙사 운영 관련 예산·회계 관리 및 물품관리
- 입사생 민원 처리 및 만족도 조사 등 서비스 품질 관리

2) 소요예산 : 326,650천원(도비 100%)

3) 예산 산출근거 : 인건비(149,203천원), 운영비 등(177,447천원)

마. 위탁시설 개요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위례순환로 364(장지동)		
시설규모	부지면적 : 15,484.00㎡, 연면적 : 25,173.236㎡(지상 28층)		
시설용도	공동주택		
준공일자	2014.7.3.	개관일자	2014. 9. 29.
소유구분	국방부(국군복지단) 소유		
이용대상	군자녀, 경기도민 대학생 등	수용인원	600명(경기도민 학생 120명)
보유장비	국방부 소관		

바. 위탁예정 기간 : '27. 1. 1. ~ '29. 12. 31. (3년)

사. 수탁기관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아.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자.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2026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적정 (‘26.07.31.)

3. 검토의견

■ 동의안 제출취지

- 본 동의안은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11조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근거하여, 2026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기도송파학사의 차기 운영을 위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재위탁(2027~2029년, 3년)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임.
- 경기도송파학사는 국방부(국군복지단) 소유 시설에서 군인자녀 우선입사 후 발생한 잔여 공실을 활용하여 경기도민 학생(120명)에게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시설임. 이에 따라 국군복지단과의 안정적인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입사생 생활지도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중단 없이 제공하고자 기존 공공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 위탁예정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326,650천원(도비 100%)임.

■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는 도지사가 청년 및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사무는 도민 대학생의 주거안정과 생활지도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으로서 수탁기관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설립 목적 및 고유 기능에 부합함.
-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10조의2 및 제11조에 따라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대학생 주거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

- 경기도송파학사는 국방부(국군복지단) 소유 시설의 잔여 공실(120명)을 활용하는 구조로, 국군복지단과의 안정적인 협조체계 유지와 입사생 보호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함.
- 아울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른 사전절차로서 2026년 제4차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26. 7. 31.)를 거쳐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므로 행정적 사전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됨.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사무위탁 및 사업대행) ①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12.3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10조의2(지원사업) 도지사는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생의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2. 대학생 또는 대학 등의 향토문화알기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대학생 또는 대학 등의 사회봉사·토론·국제교류 등 지원에 관한 사업
4. 대학생 기숙사 건립·운영 등 대학생 주거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대학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11.8.]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4.12.31.>

■ 공기관위탁을 통한 운영 타당성(지속 필요성) 검토

- 경기도송파학사는 국방부(국군복지단) 소유 시설로서 건물 및 주요 시설물 관리는 국군복지단이 직접 수행하고, 경기도는 군인자녀 우선 입사 후 남은 공실을 협약을 통해 배정받아 활용하는 특수한 운영 구조임.

- 군 복지시설의 보안 및 관리 기준상 민간위탁 운영은 제한되므로, 국군복지단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입사생 보호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 산하 공공기관 위탁이 불가피함.
- 한편, 기숙사 운영은 입사생 선발부터 24시간 생활지도, 야간 시설 관리 및 긴급 민원 응대 등 상시 현장 대응이 요구되는 집행적 사무로서, 이를 도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공무원 정원 관리 및 조직 운용 측면에서 한계가 따름. 따라서 청년 정책 및 학생 지도 인프라를 보유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위탁하여 총괄 관리하게 하는 것이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음.
- 아울러 도민 학생 배정은 국군복지단이 매년 통보하는 공실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협력 관계가 단절될 경우 공실 재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2015년 최초 100명에서 현재 120명까지 배정 인원을 확대한 성과 역시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상호 신뢰와 안정적인 협력 체계에 기반한 것인 만큼, 운영 주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업 지속의 핵심 전제임.
- 실제로 송파학사는 매년 도민 학생 120명 내외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오고 있는 바(2024년 120명, 2025년 126명, 2026년 120명), 운영 체계가 흔들릴 경우 도민 학생의 주거 공백 발생은 물론 국군복지단과의 협약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따라서 기존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2. 재난, 재해 대응 등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3.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위탁·대행사무명, 수탁·대행기관 등 위탁·대행 관련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

제5조(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가 사무를 위탁·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출자·출연기관 설립 목적 부합 여부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지속성
3.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4. 성과 측정의 용이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사무의 수행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
7. 그 밖에 위탁·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기관위탁·대행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제7조(도의회 동의) ① 도지사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위탁·대행사무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계속위탁·대행의 필요성 포함)
3. 위탁·대행사무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자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5조에 따른 위탁·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9.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시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사무를 계속 위탁·대행하려는 경우에는 6년 경과 후 첫 계약 시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무를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무의 위탁·대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추정실적이 포함된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공기관위탁·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출자·출연기관 설립 목적과의 부합 여부
2. 위탁·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4. 수탁·대행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